

- 주택가 통과도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64
------------	------

2018년 6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4월 2일, 강감창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18년 4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8년 6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강감창 의원)

가. 제안 이유

- 바야흐로 교통정책에 있어 ‘차량을 위한 속도’ 중심에서 ‘사람을 위한 배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대임. 주택가 및 통학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청의 교통 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인 ‘사람중심 걷는 도시 구현’보다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문정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교통영향평가서의 교통개선대책과 달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1만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샛길을 양방향 직진이 가능하도록 사거리 교차로로 계획함에 따라, 올림픽훼밀리타운 입주민 및 인근 지역 시민들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점에 노출될 것이라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해당 경찰청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함.

나. 주요골자

- 주민 접근성 증진을 위해 설치된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의 관통도로(중대로8길, 중대로4길)가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대형화물차량이 드나들면서 교통량 폭증에 따른 매연, 소음 등의 환경악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난 심화, 어린이 및 노약자 상해사고 증대 뿐 만 아니라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공동구 붕괴와 가스누출 등의 위험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지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개월에 걸쳐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문정동 훼밀리3길 지하공동구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공동구 지반이 침하될 경우

공동구의 구조물은 물론 도로붕괴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됨. 또한, 「도로법」 제77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도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실정임.

- 더욱이 2007년부터 서울시가 웨밀리아파트 맞은편 블럭인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에 548,239㎡ 규모로 공공청사(법조단지), 업무시설,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개선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근 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웨밀리아파트 남측 교차로의 남북방향 직진통행금지와 동남로의 서→북방면 좌회전은 허용하는 것으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서울시, 송파구청, 전문가 및 주민들이 수년간 고심하여 협의한 내용을 무시한 채 동남로와 중대로를 교차하는 직진신호체계를 결정함에 따라 올림픽웨밀리타운 1만 5천여 명의 주민들과 송파구민들은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교통영향분석은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의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외면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만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하려하고 있음. 이처럼 경찰청이 통과차량 위주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교통영향분석 결과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증가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교통영향평가 승인 결과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반영하거나,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이 조정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수정 필요
 -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는 분석 중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업시행 단계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수 있어, 교통분석, 현장여건, 지역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심의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라. 이 송 처

- 정 부 :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문정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¹⁾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결과에 따라 전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된 내용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송파구 문정동 웨밀리아파트 내 중대로4길, 8길은 단기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북측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빈번한 실정임

또한, 2007년부터 서울시가 웨밀리아파트 남측 문정도시개발사업²⁾을 추진하면서 중대로4길, 8길과 교차하는 웨밀리아파트 남측 교차로의 남북방향 직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결사항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남북방향 직진 신호체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통보³⁾한 것에 대한 지역 민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1) '86.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 ⇒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

'00.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 ⇒ 4대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제도 통합·시행

'09.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관 ⇒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명칭 변경

2) 문정도시개발사업

- 위치 :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 규모 : 548,239㎡

- 주요시설 : 공공청사(법조단지), 업무시설, 공공지원시설 등

3)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3243(2018.5.31.)

- **현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 28개 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등 32개 용도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의 승인·인가·허가 전에 해당 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4)에 따라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하여 교통편의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⁵⁾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주로 교통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등으로 이루어짐

4)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방경찰청은 25인 이상 30인 이내, 경찰서는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원
3. 그 밖에 경찰관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두 절차 모두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논의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절차로 볼 수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지침⁶⁾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변경내용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반영토록 명기되어 있음

또한, 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의 시행시기가 사업시행 단계로 교통영향평가 이후이며, 이전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사업시행 단계의 문제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하는 기능도 있다고 판단됨

다만, 문정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2007년부터 5차례⁷⁾의 걸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한 차례의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를 통한 결과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사업자 또는 해당 관청에서 결과에 대해 불복 또는 재검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① 영 제13조의8 제2항 제4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9. (생략)

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7) 문정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추진경위

- '08.05.02 :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심의위원회(1차) - '13.07.17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2차)
- '14.03.27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3차) - '15.09.21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4차)
- '16.12.14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5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주택가 통과도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바야흐로 교통정책에 있어 ‘차량을 위한 속도’ 중심에서 ‘사람을 위한 배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주택가 및 통학로 교통사고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도로교통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세계적인 추세인 ‘사람중심 걷는 도시 구현’보다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생활 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서울시의 문정도시개발사업은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에 548,239㎡ 규모로 공공청사(법조단지), 업무시설,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문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의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승인관청인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5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휘밀리아파트 남측 교차로의 남북방향 직진 통행금지와 서→북방면 좌회전은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남측 교차로의 통행체계 변경(좌회전 허용)을 반영할 경우, 교차로의 지체도와 서비스 수준은 양호한 교통소통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계속해서 남북방향 직진 통행을 주장하면서 장래 교통량 폭증에 따른 매연, 소음 등의 환경악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난 심화, 어린이 및 노약자 상해사고 증대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공동구 붕괴 및 가스 누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단지 내 관통도로의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교통영향평가 승인 결과를 반영하도록 현행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8.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1] 문정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5차 심의의결내용
중 세부보완내용(혜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 부분)

[붙임 1] 문정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5차 (훼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 부분)

【 심의의결의견 2 】

○ 훼밀리아파트 남측 2교차로의 좌회전은 허용할 것.

▣ 보완결과 : 수용

▣ 보완내용

- 훼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의 서→북(동남로→훼밀리아파트) 방면의 좌회전은 도로의 기능을 감안하여 허용하였음
- 이에 따른 신호연동화 방안 검토결과, 동남로상에 위치한 5개 교차로 중 5.훼밀리아파트 교차로는 송파대로와 동남로가 접속되는 지점으로 송파대로가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어 주기 및 최소녹색시간(횡단보도 신호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연동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5.훼밀리아파트 교차로는 신호연동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훼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의 통행체계 변경(좌회전 허용)을 반영하여 사업지구 북측도로(동남로)상의 A.신설교차로~21.훼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 구간내 위치해 있는 4개 교차로 대



하여 신호연동화 방안을 수립하여 신호주기 및 현시를 제시하였음

- 웨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의 통행체계 변경(좌회전 허용)을 반영하여 사업지구 북측도로인 동남로상에 위치해 있는 교차로의 신호연동화 방안 검토결과, 21.웨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를 기준교차로로 설정하였으며 공통주기는 120초로 분석되었음
- 또한, 교차로의 지체도는 11.2초/pcu~52.6초/pcu 서비스수준은 “A”~“D”로 양호한 교통소통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 분	분석대상 교차로(2021년, 주변가로 침두시 18:00~19:00)								
장래 교차로 침두시 교통량 (pcu/h)									
신호연동화 방안	구 분		ø1	ø2	ø3	ø4	주기	지체도 (초/pcu)	LOS
	A.신설교차로 (offset 74초)	수서역 개롱역 동남권유통단지		all red			120초	32.7	C
		주 기	29(3)	9(3)	12(3)	58(3)			
	20.웨 밀리 아파트 남측1 교차로 (offset 4초)	수서역 개롱역			-	-	120초	11.2	A
		주 기	81(3)	33(3)	-	-			
	F.신설교차로 (offset 4초)	수서역 개롱역 사업지구				-	120초	15.8	B
		주 기	47(3)	28(3)	36(3)	-			
	21.웨 밀리 아파트 남측2 교차로 (기준교차로)	수서역 개롱역 사업지구					120초	52.6	D
주 기		30(3)	23(3)	27(3)	28(3)				

- 웨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 통행체계 변경
 - 웨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 : 서→북(동남로→웨밀리아파트) 방면 좌회전 허용

○ 웨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 신호운영방안 변경

- 좌회전허용 통행체계 변경 고려
- 보행 횡단시간 고려

○ 웨밀리아파트 남측2 교차로 좌회전 허용에 대한 교통안전 및 노면표지 변경

